

## 주임 신부

주임신부는 본 회(본당 사목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하며 상임 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산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3장 8조)

## 평협회장

평협회장은 평신도를 대표하고, 주임신부의 사목 지침에 따라 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주임신부와 상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부산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3장 9조)

본당 신부와 협의하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별, 단체별 임원 지휘감독
2. 총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
3. 회장단을 지휘 및 운영
4. 신심 단체 조직 및 업무 조정
  - 가. 신심 단체의 간부 지도 및 업무 조정
  - 나. 신심 단체의 신설 및 육성
  - 다. 본당 내 각종 신심 단체 가입 권유

## 평협부회장

평협부회장은 평협회장을 보좌하고, 평협회장의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산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3장 10조)

## 총무

총무는 평협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본당 사목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부산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3장 11조)

1. 사목협의회의 준비 및 진행
2. 사목협의회 회의록의 기록 및 관리
3. 각 분과 위원회 및 제단체 행사 파악 및 협조
4. 사목협의회 임원 및 제단체장 피정/연수
5. 본당의 날 등 기념행사
6. 다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모든 행사

※ 이 업무분장은 본당 특성에 맞추어 주임신부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선교분과위원회

선교분과위원회는 예비신자 인도 및 교리, 냉담자 인도, 각종 선교 활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산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3장 12조 6항)

### 1. 본당 차원의 장·단기 선교계획 수립

- 가. 계층별 선교 대책
- 나. 단계별 선교목표 설정
- 다. 선교위원 선임, 교육 및 양성
- 라. 선교 수단 및 방법 개발
- 마. 지역사회 현실 분석

### 2. 예비신자 인도 및 관리

- 가. 예비신자 모집 및 환영식 주관
- 나. 예비신자 교리반 편성
- 다. 예비신자 나눔교리 봉사자의 양성 및 활동 배정
- 라. 예비신자 교리반 운영 협조(출석점검, 성가봉사 등)
- 마. 통신교리자 관리
- 바. 대부모 선정 및 세례청원서 작성 협조
- 사. 새 영세자 1인 1단체 가입 권유
- 아. 구역분과 인계 및 소공동체 모임 참여 권장

### 3. 냉담자 회두 및 관리 활동

- 가. 정기적인 냉담자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 나. 냉담자 회두 운동 계획 수립 및 주관
- 다. 일상적인 냉담자 가정방문 및 회두 권면 활동(구역·반별, 레지오별 등)
- 라. 판공성사 참여 권면 활동(교적 참조)
- 마. 외딴교우 초대

### 4. 기타

- (예시)
- 가. 도서관 설치 운영 (교구 신심 서적 비치)
- 나. 예비신자 피정 및 성지순례 주관

※ 이 업무분장은 본당 특성에 맞추어 주임신부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교육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는 신자들의 신앙 교육과 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산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3장 12조 2항)

1. 신자(재)교육 계획 수립 및 집행
  - 가. 신자 대상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집행
  - 나. 각 계층별 교육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 전 신자 대상 신앙교육(피정, 연수, 성경교실, 특별강론 등)
  - 라. 성월 및 전례주기(사순절, 대림절 등)에 따른 신앙쇄신 교육
  - 마. 그룹 성경공부 활성화 (교구 인준 단체에 한 함)
  - 바. 각종 교육자료 비치 및 활용
  - 사. 모든 단체 연중 교육 계획 파악
2. 전국 및 교구 차원의 신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권장
3. 인재 양성
  - 가. 꾸르실료, M.E 등 각종 교육 참가자 선정 및 업무 협조
4. 기타
  - (예시)
  - 가. 도서관 설치 운영 (교구 신심 서적 비치)

※ 이 업무분장은 본당 특성에 맞추어 주임신부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전례분과위원회

전례분과위원회는 미사 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과 성가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산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3장 12조 10항)

### 1. 교회 전례 협조

#### 가. 미사전례

- 1) 주일미사 안내, 전입신자 및 예비신자 환영
- 2) 미사전례 봉사자(해설자, 봉헌자, 독서자, 보편지향기도 담당자) 선정 및 교육
- 3) 전례 담당자 일정표 작성 및 홍보

#### 나. 대림절 및 사순절 전례

- 1) 십자가의 길
- 2) 성시간
- 3) 성체강복
- 4) 성지주일 및 성주간 예절(수난감실 조성 및 성체조배 일정 조정)

#### 다. 각종 성사 및 전례(세례, 견진, 혼배, 장례)

#### 라. 대축일(예수부활, 예수성탄) 미사전례

#### 마. 설,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2. 전례주기에 따른 전례 및 신심행사

#### 가. 성시간, 성체강복, 성모의 밤, 순교자의 밤 등

### 3. 전례 봉사자 및 복사단

#### 가. 복사단 조직 및 운영(성인, 중고생, 어린이)

#### 나. 전례 담당자 일정표 작성

#### 다. 복사단 출석 확인 및 시상

### 4. 성가대

#### 가. 성가대 조직 및 운영(지도자양성, 지휘자, 반주자, 연합 합창단 등)에 관심

#### 나. 전신자 노래지도 및 성가책 보급

### 5. 비정규 성체분배권자

#### 가. 비정규 성체분배권자 업무 협조 및 담당자 일정표 작성

#### 나. 교구 실시 교육(신규, 갱신) 참가 관리

### 6. 제대회

#### 가. 제대회 조직 및 운영에 관심

### 7. 기타

#### (예시)

#### 가. 전례용 비품 및 소모품 봉헌 독려

#### 나. 제대초 봉헌(주님 봉헌축일), 제대 장식 협조

#### 다. 평일미사 참여운동 전개

#### 라. 성가경연대회(가족단위, 단체별, 구역별 등)

※ 이 업무분장은 본당 특성에 맞추어 주임신부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구역분과위원회

구역분과위원회는 지역 공동체인 소공동체 모임의 조직, 구역봉사자, 반봉사자의 교육 및 소공동체 모임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산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3장 12조 3항)

### 1. 전입·출 교우 및 쉬는 교우 관리

### 2. 소공동체 모임을 통한 신자들의 유대강화

가. 소공동체 모임 운영

나. 소공동체 모임의 현황 평가 및 계획

다. 반봉사자 및 구역봉사자 모임 주관

라. 반봉사자와 구역봉사자 피정 및 교육 주관

마. 반봉사자와 구역봉사자를 위한 성지순례 및 야유회 주관

바. 반봉사자와 구역봉사자의 본당, 지구, 지역, 교구 교육의 참여 독려

### 3. 새 영세자 환영식

가. 선교분과로부터 인수 받은 새 영세자를 위한 환영식 주관

나. 소공동체 모임 참여 권장

### 4. 기타

(예시)

가. 판공성사표 배부

※ 이 업무분장은 본당 특성에 맞추어 주임신부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노인분과위원회

노인분과위원회는 노인들의 신앙생활과 영적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를 분장한다.

(부산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3장 12조 4항)

### 1. 노인

- 가. 노인신자 파악 및 대책수립
- 나. 교적상 연령별, 남녀별 분포 및 신자, 비신자 파악
- 다. 교육 및 여가선용 강좌
- 라. 신심활동 자리 마련
- 마. 노인들의 신앙생활, 여가생활, 건강한 생활 돌보기
- 바. 노인대학 개설 및 운영
- 사. 독거노인을 비롯한 불우한 노인 돌보기
- 아. 노노(老老) 케어
- 자. 기타 어르신 관련 업무

### 2. 애사 협조

- 가. 극빈자 및 무의탁 상가 지원과 협조
- 나. 애사(哀事)시 신자참석 권장 (초상, 장례, 탈상, 기일기도 등)

### 3. 선종봉사회(연령회) 육성

- 가. 선종봉사회원 교육 및 교육지원
  - 1) 선종자 염, 입관, 하관 예절절차 교육
  - 2) 위령제구 수선·보존
  - 3) 대세 방법 교육
  - 4) 연도 교육 및 연도책 보급
- 나. 선종봉사회 재정업무 감독

### 4. 기타

- (예시)
- 가. 연도대회 및 시상
- 나. 청소년 예절 교육
- 다. 어르신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 (예:한자교실)

※ 이 업무분장은 본당 특성에 맞추어 주임신부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용하도록 한다.